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20 발의연월일: 2022. 6. 23.

발 의 자 : 송언석 · 한무경 · 양금희

류성걸 • 윤재옥 • 김상훈

金炳旭・최춘식・윤주경

권성동 · 배준영 의원

(11일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·중·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그런데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최대 4만 7천원이고 2020년 기준 평균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 7천 500원으로, 수험생을 둔 근로소득자 가계에 적지 아니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

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(안 제59조의4제3항). 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교육비"를 "교육비(교육에 부수되는 경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③
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	
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	
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	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	
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<u>교육비</u> 를 지급한	교육비(교육에 부수
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	되는 경비를 포함한다. 이하 이
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	항에서 같다)
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	
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	
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・	1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	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	
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	
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 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 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<신 설>

2.·3. (생략) ④ ~ ① (생략)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
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
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
수수료 및 입학전형료
2.・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① (현행과 같음)